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한 신 의원 (찬성자 30명)

나. 의안번호 : 제 1001 호

다. 발의일자 : 2023. 8. 11

라. 회부일자 : 2023. 8. 21

## 2. 제안이유

- 「소방기본법」 제16조부터 제17조에 따른 다양한 소방관련 활동에는 소방공무원 이외에도 의용소방대, 사회복무요원 등 다양한 인력이 현장에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장례지원 대상에는 소방공무원만으로 한정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장례지원 대상의 범위를 형평에 맞게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제명변경)

나. 장례지원 대상자를 확대함.(안 제2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병역법」

나. 예산조치 : 원안(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 개요

- 본 개정조례안은, 소방현장에 소방공무원 이외에도 소방항공대 임기제 공무원, 의용소방대 등 다양한 인력이 동원되어 현장활동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현행은 장례지원 대상을 소방공무원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소방공무원 이외에도 소방현장에서 활동하는 인력을 추가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임. [표 1 참조]

[표 1] 개정안 수정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소방공무원이</u> 소방활동 등을 수행하는 중 순직한 경우에 그에 대한 애도와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장례식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장례지원 대상자) 이 조례의 장례지원 대상자는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이 「소방기본법」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에서 정한 소방관련 활동 중 사망하여 소방청장이 순직으로 인정한 사람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lt;신 설&gt;</p>	<p><u>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u>소방공무원 등이</u> ----- ----- ----- -----.</p> <p>제2조(장례지원 대상자) 이 조례의 장례지원 대상자는 「소방기본법」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에서 정한 소방관련 활동 중 순직(부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한 경우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소방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li> <li>2.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소방항공대 임기제공무원</li> <li>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li> </ol>

<p>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순직 <u>소방공무원</u>의 장례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u>법률</u> 제4조에 따른 대체인력</p> <p>4. 「<u>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u>」에 따른 <u>의용소방대원</u></p> <p>5. 「<u>병역법</u>」제5조에 따른 <u>사회복무요원</u></p> <p>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u>소방공무원</u>등의  <u>의</u> -----  -----  -----.</p>
--	--

## ■ 서울소방재난본부 인력 운영 현황

- 2023년 8월 기준, 서울소방재난본부 인력현황은 총 7,83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소방직 7,429명, 일반직 공무원 등 64명, 공무원 외 346명이 근무하고 있음. [표 2 참조]

[표 2] 서울소방재난본부 인력 현황 : 7,839명

(단위 : 명)

총계	소방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등					공무원 외				
	소계	소방정감	소방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이하	소계	기술직	관리운영	임기제	전문경력관	소계	공무직	축탁직	사회복무	대체인력
7,839	7,429	1	6	33	167	672	6,550	64	32	10	21	1	346	173	41	71	61

- 이중 소방직을 제외하고 소방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살펴보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1)에 따라 운영되는

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 요구구조자의 생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거나 도서·벽지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119항공대(이하 “항공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② 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업무 및 항공대원의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항공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소방항공대의 경우 총인원 17명(조종사 11명, 정비사 6명) 중 12명(조종사 6명, 정비사 6명)이 임기제공무원<sup>2)</sup>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표 3 참조]

[표 3] 서울시 2023년 소방항공대 운영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소방경	소방위	임기제
조종사	11	3	2	6
정비사	6	-	-	6

- 기존 소방인력의 휴직·과전 등으로 인한 소방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sup>3)</sup>에 따른 대체인력 61명과 「병역법」 제26조<sup>4)</sup>에 따른 사회복지요원 71명

- 2)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과전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 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이하 생략)
- 4) 「병역법」 제26조(사회복지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 ① 사회복지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업무의 지원업무

을 운영하고 있음.

- 또한 별도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sup>5)</sup>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4,495명이 각종 소방현장에 출동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 ■ 서울시 소방공무원 장례지원 현황

- 2000년 이후 소방활동재해<sup>6)</sup>로 인한 ‘서울시 소방공무원 순직자’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은평구 홍제동 주택화재(2001년)’ 순직 6명, ‘은평구 대조동 나이트클럽 화재(2008년)’ 순직 3명, ‘광진 수난구조대 구조보트 전복사고(2010년)’ 순직 2명으로 총 11명의 순직자가 발생하였으며,

---

2.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이하 생략)

- 5)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읍 또는 면에 둔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하여 그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를 화재진압 등을 전담하는 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용소방대”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구역의 특성과 관할 면적 또는 출동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6) 「소방공무원 보건의안 및 복지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의 소방활동을 말한다.
  2. “소방활동재해”란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그 밖의 소방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 (이하 생략)

- 다만, 동 조례의 제정(2016년) 이전에 발생했던 관계로 관련 예산의 편성이 이루어지지 못해 당시 순직자에 대한 장례지원 비용은 예비비로 집행했던 사례가 있음. [표 4 참조]

[표 4] 서울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 현황

구 분	은평구 홍제동 주택화재	은평구 대조동 나이트클럽 화재	광진 수난구조대 구조보트 전복사고	비 고
순직일	2001. 3. 4	2008. 8. 20	2010. 12. 3	
순직인원	6명	3명	2명	
장례구분	소방관서장 (서울소방방재본부 葬)	소방관서장 (은평소방서 葬)	소방관서장 (광진소방서 葬)	
장례장소	서울시청 후정	은평소방서 후정	어린이회관 축구장	
장례비용	123,800천원	123,000천원	74,000천원	예비비

- 참고로, 현행 조례 제6조에 따라 순직 소방공무원에게 지원되는 장례비용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장례비용)7)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결식 비용, 장례식 비용(단, 제2항에 따른 노제 비용, 조문객의 식사 비용, 삼우제 비용, 사십구일제 비용 등은 제외한다), 그 밖의 장례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른 비용이 있음.

7) **제5조(장례비용)**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장례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결식 비용
2. 장례식 비용
3. 그 밖에 장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라 장례비용 중 제외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제 비용
2. 조문객의 식사 비용
3. 삼우제 비용
4. 사십구일제 비용
5.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을 위한 비용과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7. 그 밖에 장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장례비용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용

## ■ 주요골자별 의견

### 가. 장례지원 대상자 확대 관련(안 제2조)

○ 안 제2조는, 소방활동재해로 인해 순직하는 소방공무원의 장례지원 대상자의 범위에 소방공무원 이외에도 소방항공대 임기제공무원, 대체인력, 사회복지무요원, 의용소방대원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임.

○ 이는 「소방기본법」 제16조<sup>8)</sup>, 제16조의2<sup>9)</sup>, 제16조의3<sup>10)</sup>, 제17조<sup>11)</sup>에 따른 다양한 소방관련 활동 중 부족한 소방인력을 보충

8) **제16조(소방활동)**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이하 이 조에서 “소방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9)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①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소방지원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1. 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
2.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3. 집회·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4. 화재,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5. 삭제 <2015. 7. 24.>
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이하 생략)

10)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 ①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대를 출동시켜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생활안전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1.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2.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3.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4.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5. 그 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이하 생략)

11) **제17조(소방교육·훈련)**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



하기 위해 동원되는 인적자원으로 동일한 현장에서 같은 임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 그동안 소방활동 중 순직 할 경우 장례지원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에 논란이 있었던바 안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각 호의 사람(‘소방공무원등’으로 약칭함)을 장례지원 대상자에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표 5 참조]

[표 5] 개정안 수정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2조(장례지원 대상자) 이 조례의 장례지원 대상자는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이 「소방기본법」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에서 정한 소방관련 활동 중 사망하여 소방청장이 순직으로 인정한 사람으로 한다.</u></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 설&gt;</u></p>	<p><u>제2조(장례지원 대상자) 이 조례의 장례지원 대상자는 「소방기본법」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에서 정한 소방관련 활동 중 순직(부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한 경우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소방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li> <li>2.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소방항공대 임기제공무원</li> <li>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대체인력</li> <li>4.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li> <li>5. 「병역법」 제5조에 따른 사회복지무요원</li> </ol>

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장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교육 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 (이하 생략)

- 형평성 논란을 불식시키는 한편, 소방공무원 이외의 소방활동 동원 인력에 대해서는 만일의 경우로 순직시 소방공무원과 동일한 장례 지원 혜택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토록 한다는 점에서 공감할만한 조치라 하겠음.

나. 장례지원 대상자 확대에 따른 용어 변경 관련(안 제명, 안 제1조, 안 제8조)

- 안 제명, 안 제1조, 안 제8조에서 현행 ‘소방공무원’을 ‘소방공무원 등’으로 변경하고 있는데, 이는 장례지원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총칭하여 안 제2조에서 정의한 ‘소방공무원등’의 약칭을 사용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